



광 양 시

서보는 광양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람	기관의 장

제12호 2023. 3. 22.(수)

고시

광양시 고시 제2023-104호 도로명주소(건물번호) 개별 고시 1

공고

- 광양시 공고 제2023-672호 「진월전어잡이 소리 전수교육관 건립사업」 보상계획(열람) 공고 3
- 광양시 공고 제2023-688호 도로구역 결정(변경)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5
- 광양시 공고 제2023-697호 옥곡 신금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변경] 행정예고
[주민의견청취] 6
- 광양시 공고 제2023-705호 광양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7

회 람										
--------	--	--	--	--	--	--	--	--	--	--

▶ 발행 : 광양시 ▶ 편집 : 홍보소통실 (☎797-2323, 행정2713)

도로명주소(건물번호) 개별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 3. 22.

광 양 시 장

○ 도로명주소

구 분	고 시 대 상	고시조서	비 고
도로명주소 (건물번호) 부여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익신길 163-33 외 5건	별지참조	
	아 래 빈 칸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 민원지적과(☎797-3388)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23. 3. 22.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에 의거 공법 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앞으로 공공기관에 민원신청 및 서류제출 시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 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제8조제2항에 의거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도로명주소(건물번호) 고시 대상

연번	업무구분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 사유
계	건물번호부여 6건					
1	건물번호부여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익신리 653-9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익신길 163-33	20230322	20081001	행정리명에서 인용
2	건물번호부여	전라남도 광양시 마동 1626	전라남도 광양시 눈소8길 42 (마동)	20230322	20191113	마을뒤 산등성이가 소가 누워있는 형국이 라는 옛 지명 인용 및 일련번호식 부여
3	건물번호부여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세풍리 0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세풍산단로 26-52	20230322	20180516	세풍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에서 인용
4	건물번호부여	전라남도 광양시 다압면 금천리 산355	전라남도 광양시 다압면 직금길 30	20230322	20081001	행정리명에서 인용
5	건물번호부여	전라남도 광양시 봉강면 신룡리 540-1, 산20-9	전라남도 광양시 봉강면 신촌길 114	20230322	20081001	행정리명에서 인용
6	건물번호부여	전라남도 광양시 중동 1891-1	전라남도 광양시 향만13로 17 (중동)	20230322	20090902	광양항 향만시설에서 인용, 일련번호식 부여

「진월전어잡이 소리 전수교육관 건립사업」 보상계획(열람) 공고

「진월전어잡이 소리 전수교육관 건립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15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보상대상 토지 및 물건조서 등을 열람하시고, 조서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열람기간 내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3월 일

광 양 시 장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진월전어잡이 소리 전수교육관 건립사업
- 위 치 : 전라남도 광양시 진월면 신아리 146-117 외 2필지
- 사업시행자 : 광양시장

2. 보상대상 토지 및 물건

- 광양시 진월면 신아리 146-119번지 외 1필지, 415㎡

3. 토지·물건조서 열람 및 이의신청

- 기 간 : 2023. 3. 22. ~ 2023. 4. 5.
- 열 략 장 소 : 광양시 문화예술과 문화재팀(☎061-797-2419)
 - ※ 토지·물건 조서 : 별첨
- 이의신청장소 : 광양시 문화예술과 문화재팀
- 이의신청방법 :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은 토지·물건조서의 내용에 누락 등 이의가 있는 경우 서면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음.
- 이 의 조 치 : 이의신청 내용에 대하여 현장 확인 후 시정조치 하며, 이의 신청자에게 결과 통보
- 토지·물건조서 확정 : 열람기간 내 이의신청이 없으면 토지·물건조서의 내용대로 확정되며, 누락 등의 물건에 대하여 사업시행자는 책임지지 않음.

4. 보상시기

- 2023. 4~5월 중(감정평가 및 보상액 산정 후 개별통지)
 - ※ 정확한 일정은 추후 개별 통지 할 예정이며,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5. 보상방법 및 절차

- 보상방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의 규정에 의거 3인 (도지사 및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의거 평가한 평가액의 산술 평균치를 보상가격으로 결정하고 협의요청
 - 같은 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도지사 및 토지소유자는 감정평가업자를 각 1인씩 추천할 수 있으며,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려는 토지소유자는 보상 대상 토지면적의 1/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 대상 토지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우리 시에 제출하여야 함. 이 경우 토지소유자는 감정평가업자 추천에 대한 동의를 2회 이상 할 수 없음.
- 보상절차 : 보상계획(열람) 공고→토지 등의 감정평가→손실보상 협의→보상
- 협의조건 : 토지 및 물건 등에 압류 및 근저당 등이 설정되어 있는 소유권이외의 모든 권리는 소유자가 권리를 해지한 후 협의에 응하여야 함.
- 토지소유자의 감정평가업자(1인) 추천
 - 1) 요건 :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1/2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할 경우
 - 2) 기한 :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
 - 3) 제한 : 토지소유자는 감정평가업자 추천에 대한 동의를 2회 이상 할 수 없음.

6. 기타사항

- 토지 및 물건조서의 내용을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개별통지하고 주소나 거소불명 등으로 인하여 개별통지를 받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본 공고로 대신합니다.
- 보상액, 구비서류 등 보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감정평가가 완료된 후 보상시기에 맞추어 상세 안내문을 별도 통지할 예정입니다.
- 기타 상세한 사항은 광양시 문화예술과 문화재팀(061-797-241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도로구역 결정(변경)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

광양시 진월면 신아리 산10-2번지 일원에 추진중인 지방도861호선 광양 진월 신아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구간내 도로구역 결정(변경)을 위하여 「도로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로구역 결정(변경)에 관한 주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이해관계가 있는 분이나 단체 등은 열람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 3. 23.

광 양 시 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지방도 861호선 광양 진월 신아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L=560m)에 편입된 구간의 도로구역 일부 조정에 따른 변경

2.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① 구분	② 종류	③ 노선 번호	④ 노선명	⑤ 위치	⑥ 면적(m ²)	⑦ 기점	⑧ 종점	⑨ 주요 통과지	⑩ 총연장 (km)
기정	지방도	861호선	옥곡-고달	광양시 진월면 신아리	15,718	광양시 진월면 신아리 산10-2	광양시 진월면 오사리 산146	광양시 진월면 신아리 오사리	0.56km
변경				~오사리	21,320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시행기간 : 2023. 01. ~ 2025. 01.

4. 도로구역 예정지의 위치도 및 도로계획평면도, 토지세목조서 : 게재생략(열람장소에 비치)

5. 관계서류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열람기간 : 2023. 3. 23. ~ 2023. 4. 6.(15일간)
- 열람장소 : 광양시청 안전총괄과
- 제출방법 : 열람장소에 비치된 양식에 따라 의견서 제출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청 안전총괄과(☎061-797-226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양시 공고 제2023-697호

옥곡 신금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변경) 행정예고(주민의견청취)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를 지정(변경)하고자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행정절차법 제46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지역주민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은 행정예고 하오니, 주민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관련서류를 공람 후 공람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 3. 23.

광 양 시 장

1.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개요

지구명	위 치	지정개요				지정사유	비고
		유형	등급	면적(m ²)			
				당초	변경		
옥곡신금	전라남도 광양시 옥곡면 신금리 1413-1 일원	침수 위험	가	86,068	117,011	집중호우에 의한 외수위 상승시 내수배제 불량에 의한 침수위험	변경

2.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기 간 : 2023. 3. 23. ~ 2023. 4. 6. (15일간)

나. 장 소 : 광양시 안전총괄과, 옥곡면사무소

다. 관련서류 : 옥곡 신금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변경) 지형도면,
주민공람의견서(양식)

3. 주민의견 제출

가. 제 출 처 : 공람장소와 동일

나. 제출방법 : 공람장소에 비치 된 공람의견서 양식에 의거 서면제출

다. 제출기간 : 공람기간 이내 (공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60일 이내 결과 통보)

4.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청 안전총괄과(☎061-797-226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양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광양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광양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22일

광 양 시 장

1. 자치법규명 : 광양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 제정이유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에 따라 풍수해 피해로부터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 시설 설치를 지원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조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 시장 및 시민의 책무(안 제3조~제4조)
-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및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6조)
- 실태조사, 지원기준, 사후관리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10조)
- 협력체계 구축·운영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안 제11조~제12조)

4. 입법예고기간 : 2023. 3. 22. ~ 2023. 4. 11.(20일간)

5. 의견 제출

- 제출일시 : 2023년 4월 11일 까지
- 제출방법 : 우편, 전자우편, 팩스, 직접방문
- 기재내용 : 주소·성명·전화번호·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제출기관 : 광양시장(안전총괄과)
(주 소) 전남 광양시 시청로 33(광양시청 안전총괄과)
(전화번호) 061-797-2268 (FAX) 061-797-2593
(전자우편) dydqja1215@korea.kr

붙임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2. 광양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광양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견	비고
	찬성	반대		

광양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풍수해로부터 광양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택의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풍수해”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2. “침수 방지시설”이란 풍수해로부터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주택의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출입구 등에 설치하는 물막이판 등의 시설을 말한다.
3.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고 한다)은 풍수해로부터 광양시민(이하 “시민”이라고 한다)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풍수해의 예방 시설을 설치하거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시민의 책무) 시민은 소유 주택에 대한 침수 방지 및 수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해야 하며, 시장의 행정조치에 협력해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시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을 고려하여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③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침수 방지지설 설치 지원절차 및 지원 대상
3. 침수 방지지설 설치 지원을 위한 예산 규모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관리실태조사 등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침수 방지지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지원 대상) ① 시장은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주택의 출입구에 소유자·점유자·관리주체가 신청하는 경우 침수 방지지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따른 비용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해당하는 주택을 우선하여 지원해야 한다.

1.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 제2조제2호 및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지역의 주택
2. 과거 침수 피해가 발생했던 지역의 주택
3.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소규모 공동주택
4. 하천 인접 또는 하천의 최고수위보다 낮은 지역의 주택
5. 해안 또는 저수지 인근 저지대 지역 주택
6.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침수흔적도 및 침수예상도에 침수 흔적이나 침수 범위를 표시한 지역의 주택

제7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큰 지역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단체 등

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지원기준)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용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이 수립된 공동주택의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을 우선 사용하도록 권고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치 비용 지원액의 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독주택 : 설치 개소 당 2백만원 이하
2. 공동주택 : 설치 개소 당 5백만원 이하
3. 자동 운행 물막이판 설치 시 지원액 한도는 별도로 정할 수 있음

제9조(사후관리)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아 주택 등에 설치된 시설을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에 따라 적절하게 유지·관리하게 해야 하며, 설치완료일 기준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사후관리를 위한 관리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를 위해 지원 대상에게 직접 자료를 제출받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 조사 등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 따라 시설물 유지관리업 등 관련 자격을 가진 자에게 사후관리를 위한 실태조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홍보 등) 시장은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광양시 공보 및 누리집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11조(협력체계 구축·운영) 시장은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수자원분야 또는 자연재해 전문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제1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

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